

일부 사업장의 파업 및 교섭 쟁점은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.

1. 관련 기사

- 8.24.(월) 이데일리, “노봉법발 파업 본격화...차·조선·철강 등 산업계 전방위 확산”

2. 설명 내용

- 현대자동차의 파업 및 기아자동차·HD현대중공업·한화오션·삼성중공업·포스코의 파업 예정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
 - 기사에 언급된 사업장 중 현대자동차 1개소만 파업을 실시하였으며, 6개社 모두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*을 놓고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임
 - * ▲현대자동차: 기본급, 성과급·상여금, 정년 연장 등, ▲기아자동차: 기본급, 성과급 등, ▲HD현대중공업: 기본급, 성과급·상여금, 정년 연장 등, ▲한화오션: 기본급, 성과급, 정년 연장 등, ▲삼성중공업: 기본급, 신규 채용, 정년 연장 등, ▲포스코: 기본급, 격려금 등
 - 노사분규는 전년 대비 감소(8.21. 기준 47건, ▲22건)하는 등 현장의 노사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,
 - －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쟁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분규의 예방 및 조정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
- 금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, 손해배상 범위 제한,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임

○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간 분쟁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부터 있어 온 것으로,

－ 최근 개별 기업의 실적 향상과 성과 분배를 중시하는 노동시장의 인식 변화 등으로 경영성과급 지급 규모 및 형식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증대한 것임

○ 따라서,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성과급 등이 새롭게 노동쟁의 대상으로 문제된 것은 아니므로 주요 사업장의 노불법발 파업 본격화 주장은 사실과 다름

□ 한편, ‘영업이익 N% 성과급’의 노동쟁의 대상성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며,

○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 간 갈등을 예방·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임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재훈 (044-202-7620)
		담당자	서기관	김영덕 (044-202-7621)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강승헌 (044-202-7611)
		담 당	사무관	서관범 (044-202-7607)